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85
----------	-------

발의연월일 : 2025. 7. 28.

발 의 자 : 송재봉 · 이병진 · 전종덕
백승아 · 이수진 · 김문수
김우영 · 강준현 · 남인순
이용선 · 이광희 · 황명선
박홍배 · 최혁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여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음.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자담배 매장이 확산하고 있어 청소년이 쉽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입·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노출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며,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를 연초의 유래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

조 제1항).

법률 제 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초(煙草)의 잎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연초(煙草)

나. 니코틴

제30조제1항 중 “연초의 잎”을 “연초, 니코틴”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담배”란 <u>연초(煙草)의 잎을</u>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1.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u> ----- ----- ----- -----.
<u><신 설></u>	<u>가. 연초(煙草)</u>
<u><신 설></u>	<u>나. 니코틴</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u>연초의 잎과 담배</u> 는 몰수한다.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 ----- ----- <u>연초, 니코틴</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